

정기(기동점검) 점검 결과보고

[노들섬 특화공간조성사업 기계설비공사(장기-1차)]

- 점검일시 : 2019.06.26 (수)
- 점검결과
- ◆ 점검자 : 윤원섭,이태형

○ 감전재해 예방(설비부)

- 다목적시설 내부 가설분전함 사용시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지를 실시해야되나, 분전함 인입선을 2P를 사용해서 분전함 전체가 접지가 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콘센트를 분전함 내부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사용시 충전부 접촉에 의한 감전위험이 있음. 외부에서 콘센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접지 실시요망(NO.9)

-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2조(전기 기계·기구의 접지)
- ※ 건설공사장 중점관리 20대 항목 근로자보호 기본사항 10대 항목(9. 전기설비 접지실시)



○ 추락재해 예방(설비부)

- 정화조 작업을 위해 설치 한 사다리식 통로는 근로자 이동시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 조치 요망

-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 추락재해 예방(설비부)

- 정화조 상부 슬라브 단부는 안전난간대가 탈락되어 있어 근로자 작업시 추락위험이 있으므로, 견고한 재질로 안전난간대를 즉시 설치 요망 (NO.10)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 건설공사장 중점관리 20대 항목 근로자보호 기본사항 10대 항목(3. 개구부 관리철저)



○ 화재/폭발/질식 재해 예방(설비부)

- 다목적시설 내부에 보관중인 고압가스 용기는 전도시 폭발 화재 위험이 있으므로, 전도 위험이 없도록 위험물 저장소에 보관 요망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가스등의 용기)

